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음료알콜 상표표준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lcoholic beverage)
(중화인민공화국경공업부 1989.2.22승인, 1989.9.1 시행)

1.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 본 표준은 음료 알콜상표의 기본내용과 구비조건을 규정한다.
- 본 표준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포장을 준비하는 음료주의 상표에 적용한다.

2. 인용표준

- GB 7718 식품상표 통용 표준
- GB 10343 식용 알코올(酒精)

3. 용어정의

- 3.1 음료주 (飲料酒)
음용으로 사람에게 공급되는 주정함량이 0.5%~65.0%(V/V)의 음료를 지칭한다. 각종 발효주·증류주 및 조제주를 포함한다.
- 3.2 발효주(釀酵酒)
양곡·과일 혹은 사용 허가된 야생식물의 원료로 발효 방법을 통해 양조하여 만든 술을 지칭한다.
- 3.3 식용 주정
양곡, 고구마·감자류, 당밀을 원료로 발효·증류를 통해 제조한 것을 지칭하며 GB 10343의 식품 공업전용 주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3.4 증류주
양곡, 고구마·감자류, 과일 혹은 당밀을 원료로 발효 방법을 통해 양조, 증류(혼제 침향증류, 침전증류, 정제증류 포함) ,저장, 회석 배합으로 만든 술을 지칭한다.

3.5 조제주(노주(露酒)¹⁾포함)

발효주, 증류주 혹은 식용 주정을 주요 기본 술로 가공(식용동물, 식물, 중의(中醫) 약재를 혼제첨양증류 혹은 침전시킨 것 포함)하거나 과즙·식품첨가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는 배합으로 만든 술을 지칭한다.

3.6 주정도(酒精度, ethyl alcohol 포함)

20°C에서 100ml 음료주 중 함유된 메틸알콜(酒精)의 ml 수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체적(용량)의 % 수, 혹은 100g 음료주 중 함유된 메틸 알콜(酒精)의 g 수, 즉 질량의 % 수.

3.7 배합 재료

GB 7718 (식품상표 통용기준) 중 3.5 조

3.8 식품 첨가제

GB 7718 (식품상표 통용기준) 중 3.4 조

3.9 품질보존기간과 보존기간

GB 7718 (식품상표 통용기준) 중 3.6조와 3.7조

4 총 칙

- 4.1 음료주 상표는 중국 법률·법규·규칙·강제성 표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4.2 음료주 상표는 착오나 쉽게 오해를 야기하거나 혹은 제품을 기만성의 방법으로 기술하거나 소개해서는 안 된다.
- 4.3 상표는 정연하고 단정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포장용기와 분리해서는 안되며 유통 체계 중 변질되어 모호하게 되거나 탈색(자)되어서는 안 된다.
- 4.4 상표 상의 모든 언어는 간단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도형 부호는 직관적이고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 4.5 상표 상에 사용하는 문자는 규범화된 한자이어야 하고 소수민족지역은 소수민족문자를 표기할 수 있고 또한 중국어 발음과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확하고 착오가 없어야 하고 중국어보다 커서는 안되며 또한 중국어와 상응 관계이어야 한다.

5 상표의 기본내용과 구비조건

제품 표준 중 규정한 구체적인 내용 외에 아래 5.1~5.11조항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5.1 주명(酒名)

5.1.1 음료주(飲料酒)의 본연 속성을 표기한 전문 명칭을 채택해야 한다.

1) 과즙 혹은 꽃향기를 함유한 술

- 5.1.1.1 제품 표준 중 몇 개 명칭을 규정했을 시 이 중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
- 5.1.1.2 전통 주종(酒種)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 혹은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상용 명칭 혹은 속칭을 사용할 수 있다.
- 5.1.2 새로 만든 명칭 사용 시 오해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 주명(酒名) 뒤에 주류 명칭을 부가 설명하여야 한다.
- 5.1.3 주명(酒名)은 크게 혹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해야 하고 상표 전체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어야 한다.

5.2 배합원료표

- 5.2.1 음료주 상표에는 배합 원료표를 명시해야만 한다.
- 5.2.2 배합 원료표의 표제는 “원료” 혹은 “원료 및 배합배합원료”를 사용하여 상표에 표기할 수 있다.

예 : 맥주원료 : 물, 맥아, 쌀, 호프(hop)

- 5.2.3 모든 배합원료는 투입량에 따라 많은 것에서 작은 것 순서로 나열한다.
- 5.2.4 조제주(노주<露酒>포함)는 반드시 술 제조에 기본이 되는 것, 케미증류(혹은 침전)의 식용 동, 식물 및 국가가 사용을 허가한중의(中醫) 약재를 명시하여야 한다.
- 5.2.5 주(酒) 중 사용한 식품첨가제는 국가 규정의 종류별 명칭에 의거 열거하고 예를 들면 “감미제(甘味劑)”·“산미제(酸味劑)”·“향응고제” 등, 단 색소는 합성색소 또는 천연색소인지를 표기한다. 사카린(saccharine)은 특별히 표기한다.

5.3 알콜농도(酒精度)

- 5.3.1 모든 음료주는 반드시 알콜농도 즉 메틸 알콜 함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 5.3.2 알콜농도 표기 시 “알콜농도”라는 표제를 부가해야 한다.
- 5.3.3 알콜농도 표기방식은 맥주는 % (m/m) 혹은 환산하여 %(V/V)표시한다. 기타 주는 모두 %(V/V)표시한다.

5.4 원액량

- 5.4.1 맥주는 보리원액 농도(함량)를 표기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숫자 오른쪽 상단에°(작은 원형)를 부가하여 “도(度)”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12도 맥주는 “12° 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 5.4.2 과일주(포도주 포함) 과일원액 함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표기방식은 백분율에 괄호를 하고 표시한다. 예를 들어 “사과주(50%)”표시는 50/100의 사과원액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5.5 순합량

- 5.5.1 상표상에 각각의 포장용기(병, 캔, 통)중 술의 순합량을 표기해야 한다.
- 5.5.2 만약 동일 포장 중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서로 품질이 같고 순합량이 같은 소포장 일 시는 소포장 순합량을 표기하는 것과 함께 소포장의 총수량을 표기해야 한다.

5.5.3 순함량 상표 표기방법은 체적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호승(毫升) 혹은 ml, 升 혹은 l.

5.6 제조자·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GB 7718 중 5.4조에 의거 실시

5.7 허가번호

GB 7718 중 7.1조에 의거 실시

5.8 생산일자(용기주입 포장일자)

5.8.1 상표상에 제품의 생산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일자는 년, 월, 일 순서로 표기한다.

5.8.2 분사색칠(실크인쇄 기법)·부조(浮彫) 혹은 기타방법으로 상표에 표시하는 생산일자는 단정, 정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보존되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5.8.3 무색 투명한 유리병으로 포장하는 무색(無色)주는 생산일자를 상표 뒷면에 표기할 수 있고 기타 주는 상표 정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5.8.4 맥주 생산일자는 현행방법에 따라 하는데 즉 상표위에 녹색인쇄 숫자로 1~12로 월을 표시하고 아래에는 녹색을 이용하여 1~31로 일자를 표시하고 두 단위 수치를 이용하여 최근 3년의 연도를 나타내고 해당하는 숫자로 정확하게 생산일자를 나타낸다(년, 월, 일).

5.9 품질보존기간(혹은 보존기간)

5.9.1 품질보존기간(혹은 보존기간)을 18개월 초과한 음료주(원액포도주, 증류주 혹은 증류주를 기초로 한 배합제조주)는 품질보존기간(혹은 보존기간)을 표기할 수 없고 가타주는 품질보존기간(혹은 보존기간)을 표기해야만 한다.

5.9.2 품질보존기간(혹은 보존기간)의 표시방법은 GB 7718 중 5.5.1.1조와 5.5.1.2조에 의거 실시한다.

5.9.3 만약 품질보존기간(혹은 보존기간)이 저장조건과 관련한 것은 품질보존기간(혹은 보존기간)표기와 함께 저장 조건과 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5.10 제품표준번호 및 품질등급

5.10.1 제품에 시행한 국가표준·업종표준 혹은 기업표준의 고유번호와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5.10.2 모든 제품 표준 중 이미 등급이 나뉜 것은 제품의 품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표기방식은 제품표준 고유번호와 일련번호 후 문자와 괄호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GB 10718.1(1급)이다.

5.11 제품 유형별 (혹은 당도)

5.11.1 과일주, 포도주와 황주(黄酒)²⁾는 유형(혹은 당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포도주를 예

2) 황주(黄酒) : 차조·차수수·쌀 등으로 제조한 빛이 누렇고 순도가 낮은 술. 일반적으로 소흥주(紹興酒)의 다른 이름

를 들면 유형 : 반간(半干, 반건류)(혹은 당도: 7.0g/l)이다. 5.11.2 배합제조주의 노주(露酒)는 당도를 표기해야 한다.
5.11.3 백주³⁾는 향형(香型)을 표기해야 한다.

6. 수출용 주(酒)

수출용 주의 상표는 계약에 의거 실시한다.

부가설명

본 표준은 전국식품공업표준화기술위원회와 경공업부가 제출한 것으로 경공업부 식품발효공업과학연구소에 속한다.

본 표준은 경공업부 식품발효공업과학연구소와 북경시양주총창(釀酒總場)이 책임지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본 표준 주요 초안작성자는 티엔치징(田栖靜),런커다(任可達)이다.

주: 본 문과 본 기술감독국 국가표준 관련 문서(1994) 085호 국가표준 제1호 개정서식, 기술감독국 국가표준문서(1994)194호 국가표준 제2호 개정서식, (94)기술감독국 상표 관련 제061호, 국가기술감독국표준화사(司) 수정지시 공문과 기술감독 국가표준관련 문서 (1995) 208호에 국가표준 제3호 개정서식에 의거 개정을 실시한다.

3) 백주 : 중국 대부분의 술로 수수·옥수수·고구마 등 양식 혹은 과일 등으로 발효·증류하여 제조한 술로 무색으로 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소주(燒酒), 백간(白干)이라고도 한다.